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0가합12339(본소), 2021가합173(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김연택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종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0.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내외장시공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0. 31. 피고로부터 논산시 C,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4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착공일 2019년 11월, 착공시로부터 5개월내 준공하기로 정하여 도급(을제1호증의 2)받았는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도급계약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F이 피고에게 원고를 시공사로 소개해주면서 체결하게 된 것이고,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2. 9. 이 사건 공사에서 '토목 향타작업, 엘리베이터작업은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추후 협의하여 합의하면 삽입한다', '계좌번호 : 예금주 : (주) E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라는 특약사항을 약정하고, 공사기간을 2019. 11. 14.부터 2020. 4. 14.까지, 공사대금을 1,26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계약(을제12호증)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변경계약을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위 F은 피고에게 선수금을 E 계좌로 송금해주면 원고에게 전달하겠다고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2019. 11. 21.부터 2020. 2. 25.까지 686,6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중 220,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66,60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F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86,6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220,000,000원만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는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나 원고가 지정하는 업체에만 송금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20. 3. 24.경 공사기간을 2019. 11. 14.부터 2020. 4. 30.까지, 공사대금을 1,2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면서, '본 계약전의 계약서는 모두 무효로 한다. 별도의 공사 파일, 항타, 재료비, 노무비 합계금 8,000만 원은 추가공사비로 지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갑제7호증)에 대하여 합의하였다(이하 위 변경계약을 '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20. 6. 1.경 이 사건 공사에서 도장 및 내장공사 등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92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최종변경계약(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변경계약을 '최종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20.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20. 7.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0. 7.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1. 2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737,500,000원(=직접 수령금 532,000,000원 + 하도급직불처리 205,500,000원)을 지급받아, 184,00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차. 한편, 피고는 위 F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피고로부터 686,6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2. 10.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F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2022고합113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4, 6, 7, 8, 12, 15, 16, 18,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4,000,000원(=921,500,000 - 7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기성금 지급요청 내용증명(갑제5호증)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1. 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준공기성금 지급요청 내용증명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2020. 9.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를 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는 현장소장 G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 2)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6. 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완성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H의 I을 통해 마무리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3) 최종변경계약서는 원고가 F이 횡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사대금만 수정하자고 하여 공사대금을 92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차변경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1,347,500,000원(=기존 공사금액 125,950,000원 + 추가공사비 88,000,000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1,505,182,000원(=E에 송금한 686,600,000원 +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312,000,000원 +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한 금액 140,550,000원 + 마무리 공사업체에 지급한 금액 366,032,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157,682,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기에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살피건대, 갑제1, 11, 13호증, 을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들에는 그 계약당사자가 원고 및 피고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근, 레미콘 등 건설자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는 G는 원고의 직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가 2020. 3.경 위 F이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까지 종합하면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완성 여부

을제2, 13,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H 등이 유리, 도장 및 잡공사 등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마무리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1, 7호증,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0. 6. 1. 이 사건 공사에서 유리, 도장 및 잡공사를 제외하고 공사금액을 감액하기로 최종변경계약(을제1호증의 1)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제2, 3, 11, 1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최종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는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건물은

2020. 7. 13. 사용승인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의 최종변경계약(을제1호증의 1)은 2차변경계약(갑제7호증)과 다르게 '기타사항'으로 '상가내 칸막이 시공은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유리, 도장 및 잡공사가 제외되었으며, 장애인시설이 추가되는 등 공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921,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종변경계약에 따라 921,5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장의 차이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53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3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220,000,000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고가 E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220,000,000원을 직접 지급받은 금액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E에 지급한 금액을 모두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다.

또한 하도급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205,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40,55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금액에는, 피고가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지급했다는 금액 중 64,950,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공사를 위해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만 차이가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 E에 송금한 금액

피고가 별지 목록2의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계좌로 686,600,000원을 송금한 사실, E은 위 686,600,000원 중 220,000,000원만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F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E이 원고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466,600,000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2, 을제12,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E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시공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여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1차 변경계약의 특약사항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E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F이 1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날인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F이 원고에게 전달하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위 특약사항에 원고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③피고는 위와 같이 E에 송금할 당시 E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원고에게 미리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F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H 등 마무리 공사업체에 지급한 금액

피고가 H 등에 유리, 도장 및 마무리 공사를 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최종변경계약서(을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0. 6. 1. 이 사건 공사에서 유리, 도장 및 잡공사를 제외하고 공사금액을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H 등에서 수행한 공사 중 창호, 석재로 지급된 금원 합계 64,950,000원(=창호공사금액 14,800,000원 + 석재공사금액 50,150,000원)은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내용라고 하며, 위 금원을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한 것으로 반영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피고가 마무리 공사업체에 지급한 금원에서 원고가 자인한 금원을 제외한 301,082,000원(=366,032,000원 - 64,950,000원)에 대하여는 위 최종변경계약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위 마무리 공사 업체에게 지급한 금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대금은 921,500,000원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737,500,000원(=직접 수령금 532,000,000원 + 하도급직불처리 205,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184,000,00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기성금 지급요청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1. 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진, 판사 정선희, 판사 박채은

별지 목록1

	날짜		항목		적분(원)	비고
5	19.12.12	->		30,000,000		갑6
7	20.01.21	->		150,000,000		갑6
9	"	->		20,000,000		갑6
10	20.02.27	>	합계 220,000,000원	20,000,000		갑6
12	20.03.16		(소방)		30,000,000	윤8-11
13	"		(전기통신)		30,000,000	윤8-12
14	"	->		48,000,000		윤8-5
15	20.03.17	->		60,000,000		윤8-6
17	20.03.27		(월근)		10,000,000	윤8-13
19	20.04.02	->		69,000,000		윤8-7
21	20.05.12	->		52,000,000		윤8-8
22	20.05.18	->		30,000,000		윤8-9
23	20.05.19	->		15,000,000		윤8-10
24	20.05.29				20,000,000	윤16
26	20.06.03				9,000,000	윤19
28	20.08.03		(월근)		7,550,000	윤9-2
29	20.08.03		창호		14,800,000	윤9-2
30	20.08.03		석재		50,150,000	윤9-2
31	20.08.14	->		38,000,000		윤9-2
32	20.08.24	철물()			10,000,000	윤9-2
33	20.09.21	철물()			9,000,000	윤19
35	20.09.21				15,000,000	윤19
			합계	532,000,000	205,500,000	737,500,000

별지 목록2

1. 피고가 E에 송금한 금액

일 자	송금액	비고
2019. 11. 21.	9,100,000원	을 제8호증의 1
2019. 12. 9.	450,000,000원	을 제8호증의 2
2020. 1. 16.	167,200,000원	을 제8호증의 3
2020. 2. 25.	60,300,000원	을 제8호증의 4
	합계	686,600,000원

2.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일자	금액(단위: 원)	비고
2020. 3. 16.	48,000,000	을 제8호증의 5
2020. 3. 17.	60,000,000	을 제8호증의 6
2020. 4. 2.	69,000,000	을 제8호증의 7
2020. 5. 12.	52,000,000	을 제8호증의 8
2020. 5. 18.	30,000,000	을 제8호증의 9
2020. 5. 19.	15,000,000	을 제8호증의 10
2020. 8. 14.	38,000,000	을 제19호증
합계액	312,000,000	

3.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직불로 지급한 금액

일자	공사업체	금액(단위: 원)	비고
2020. 3. 16.		30,000,000	을 제8호증의 11
2020. 3. 16.		30,000,000	을 제8호증의 12
2020. 3. 27.	주	10,000,000	을 제8호증의 13
2020. 5. 29.	데미콘	20,000,000	을 제16호증
2020. 6. 3.	데미콘	9,000,000	을 제19호증 제2쪽
2020. 8. 3.		7,550,000	을 제19호증 제3쪽
2020. 8. 24.	철물	10,000,000	을 제19호증 제4쪽
2020. 9. 21.	철물	9,000,000	을 제19호증 제5쪽
2020. 9. 21.	데미콘	15,000,000	을 제19호증 제5쪽
합계액		140,550,000	

4. 피고가 마무리 공사업체에 지급한 금액

일자	내용	금액(단위: 원)	비고
2020. 6. 18.	현금수령	3,000,000	을 제10호증
2020 8. 3.		170,880,000	을 제19호증의 3 쪽
	현금출금()	67,200,000	을 제19호증 제4 쪽
	()	14,800,500	
	)	15,000,500	
	()	50,150,500	
	₩	45,000,500	
합계		366,032,000	

1)피고는 2023. 5. 22. 반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3. 5. 25. 제4회 변론기일에서 위 반소취하에 동의하였다.